

# 개호보험에 대해서

## 고베시 개호보험과

### ○65 세 이상 이신 분들의 개호보험료

65 세 이상 이신 분들의 보험료는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.

#### 2024 년도~2026 년도의 한 명의 연간 보험료는

① 본인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② 본인이 노령 복지 연금을 받고 있고, 또한 그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③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, 또한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(※) 합계가 80.9 만엔 이하인 경우	⇒	18,556 엔 (월평균 1,547 엔)
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, 또한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(※)의 합계가 80.9 만엔을 넘고 120 만엔 이하인 경우	⇒	34,348 엔 (월평균 2,863 엔)
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, 또한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(※)의 합계가 120 만엔을 넘는 경우	⇒	53,693 엔 (월평균 4,475 엔)
본인에게서는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지만, 그 세대에 시민세가 부과되는 분이 있는 경우, 또한 본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 금액(※)의 합계가 80.9 만엔 이하인 경우	⇒	71,064 엔 (월평균 5,922 엔)
본인에게서는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지만, 그 세대에 시민세가 부과되는 분이 있는 경우, 또한 본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(※)의 합계가 80.9 만엔을 넘는 경우	⇒	78,960 엔 (월평균 6,580 엔)
본인에게 시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	⇒	본인의 소득에 따라서, 90,804 엔 (월평균 7,567 엔)~ 225,036 엔 (월평균 18,753 엔)

※합계 소득 금액이란 수입으로부터 필요 경비 (공적 연금등 공제나 급여 소득 공제등)를 공제한 금액입니다.

### ○40 세~64 세의 분들의 개호보험료

가입한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납입하게 되었습니다.

(의료보험자 마다 산출한 계산방법으로 보험료를 결정)

○개호보험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.

**재택 서비스**

<p><b>방문 개호(홈 헬프 서비스)</b></p> <p>홈 헬퍼가 가정을 방문하여 입욕·배설등의 신체 개호나 조리 세탁·청소·쓰레기처리등의 생활 원조를 합니다.</p>	
<p><b>통소 개호 (데이 서비스)</b></p> <p>데이 서비스 센터 등에 다니며 입욕이나 식사제공, 기능 훈련(리ハビリ레이션)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<p><b>통소 리ハビリ레이션 (데이 케어)</b></p> <p>노인보건시설 등에 다니며 전문가에 의해 기능 회복 훈련(리ハビリ레이션)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
<p><b>단기 입소 생활 개호 (쇼트 스테이)</b></p> <p>특별 양호 노인 홈 등 단기간 입소하여 개호나 일상생활의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<p><b>단기 입소 요양 개호 (쇼트 스테이)</b></p> <p>노인보건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해 개호나 필요한 기능훈련(리ハビリ레이션)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
<p><b>복지 용구 대여</b></p> <p>휠체어, 전동 침대, 보행기등의 복지 용구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요개호 인정에서 경도라고 판정된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용구가 있습니다.</p>	<p><b>주택 리폼비용 지급</b></p> <p>주택의 난간 설치나 계단의 높낮이를 고치는 등의 일부 비용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리폼비용 상한은 20 만엔으로 그 범위내에서 걸린 비용의 9 할분 (일정이상 소득자는 8 할 또는 7 할분)을 지급합니다.)</p>

## 시설 서비스

(※개호 노인 보건시설·개호 의료원은 「요개호 1~5」이라고 인정 받은 분,  
특별양호 노인홈은 원칙 「요개호 3~5」의 분이 대상입니다.)

주택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「특별양호 노인홈」 등의 개호보험 시설에  
입소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\*개호보험 시설 입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「에가오 노 마도구치」에서  
케어 매니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.

○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

① 65 세 이상 이신 분들

입욕, 배설, 식사등 일상 생활 동작이 항상 개호가 필요한 경우(요개호 상태), 혹은, 항상 개호가 필요하지 않아도, 가사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(요지원 상태)라고 인정이 되면,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② 40 세~64 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

노화에 의해 생기는 병(뇌혈관 질환이나 인지증등의 16 종류의 특정 질병)에 따라서 요개호 상태나 요지원 상태라고 인정받으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○이용자 부담은 1 할입니다 (일정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 할 또는 3 할)

개호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걸린 비용의 1 할 (2 할 또는 3 할)이 이용자의 부담이 됩니다. 다만 1 개월의 이용자 부담이 일정액(\*)을 넘는 경우 구청에 신청하여, 초과된 금액(고액 개호 서비스비)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
( \* ) 세대마다 시민세의 과세 상황등에 따라, 15, 000 엔~140,100 엔

보험료의 체납에 주의해 주십시오

○ 납부 기한으로부터 1 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...

개호 서비스의 비용을 **일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**

(다만 후일 구청에 신청하면 9 할(8 할 또는 7 할)이 환불 됩니다.)

○ 납부 기한으로부터 1 년 6 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...

환불 되는 9 할(8 할 또는 7 할)의 지불금이 **일시 중지되거나**

**체납 보험료에 충당되는** 경우가 있습니다.

○ 납부 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...

서비스 이용 시에 미납 기간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3 할(또는 4 할)이 됩니다. 또한 3 할(또는 4 할)이 된 기간중은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이나 식비·거주비의 부담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○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요개호(要介護)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
### ①요개호 인정의 신청

「에가오 노 마도구치」나 「안신 수코야카 센타」에 신청서나 신청수속등을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.



### ②인정 조사

고베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조사원이 가택이나 입원처를 방문해 몸상태 등 전국 공통인 74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합니다.



### ③ 주치의 의견서

다니고 계시는 병원 의사에게, 의견서를 작성 받습니다. ( 고베가 의뢰합니다 )

### ④ 개호 인정 심사회

전문가에 의한 심사회에서,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가를 심사·판정합니다.

### ⑤ 인정·결과 통지

개호 인정 심사회의 판정 결과를, 신청자 본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.



### ⑥개호 서비스의 이용

요개호 1~5 의 경우에는 「에가오 노 도구치」, 요지원 1·2 의 경우에는 「안신 수코야카 센타」에 의뢰하여, 케어플랜 작성, 서비스 이용 조정이나 예약등을

합니다.「안신 수코야카 센타」는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.

- **개호보험 제도에 관해 자세한 사항** (구조,수속,에가오 노 마도구치의 정보 등)  
고베시 종합 콜센터 (일본어) ☎0570-083-330 ☎078-333-3330  
고베시 개호보험과 (일본어) ☎ 078-322-6228

- **인정 조사등을 할 때 통역 자원봉사자 파견을 받으시려면**

(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친족등의 통역 원조가 없는 분)

**파견 단체**

- [~~한국어~~]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베정주외국인 지원센터☎ 612-2402
- [중국어]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베정주외국인 지원센터☎ 612-2402
- [중국어]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다언어센터 FACIL ☎ 736-3040
- [베트남어]베트남 꿈 KOBE ☎ 736-2987
- [베트남어]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베정주외국인 지원센터☎ 612-2402
- [포르투갈어] 간사이 브라질인 커뮤니티☎ 222-5350